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의안번호: 제1654호
- 다. 발의일자: 2020. 7. 13.
- 라. 회부일자: 2020. 7. 14.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안 제13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

연번	인권영향평가 항목	개정 권고 조항	권고사유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

- 한편, 현행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 행위별 부과기준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과태료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있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각종 무단투기, 예를 들면 일반쓰레기나 담배꽂초 등의 무단투기나 종량제봉투의 시간외배출 및 혼합배출 등에 대해 자치구 청소행정과 등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 6월말 현재까지 31만여 건이 부과되었고, 이 중 0.16%인 510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음.

〈최근 3년간 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현황〉

과태료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비고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건)	128,957	128,686	57,343		
	이의 신청	건	185	214	111	
		%	0.14	0.17	0.1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조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가. 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꽂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원)